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위기대응법

주체111(2022)년 10월 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077호로 채택

제1장 위기대응법의 기본

제 1 조 (위기대응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위 기 대응법은 국가적 인 비상위 기 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 한 사업 체 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국가의 안전과 인민의 생명재산을 수호하고 사회의 안정을 보장 하 는데 이바지한다.

제 2 조 (정의)

위기대응은 악성전염병의 류입과 전파, 큰물, 태풍, 지진, 화산을 비롯한 각종 위기가 발 생하였을 때 그것을 주동적으로, 안정적으로 억제, 관리, 해소하여 국가와 사회, 인민들에게 주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가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는 사업이다.

제 3조 (위 기대응의 기본원칙)

국가는 보건위기, 자연재해위기와 같은 비상위기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통일적인 지휘체 계와 비상사업 체계를 정 연하게 세우고 위 기상황에 따르는 기동적 이 며 효률 적 인 조정으 로 부닥치는 돌발사태를 성과적으로 타개해나가도록 한다.

제4조 (고도의 자각적일 치 성 , 전민항전의 원칙)

국가는 위 기 대응에서 고도의 자각적일 치성을 보장하며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인민대중 에게 의거한 전민항전, 전민합세로 조성된 위기를 안정적으로 억제, 관리, 해소하도록 한다.

제 5조 (위기대응사업에 저해를 준자에 대한 처벌원칙)

국가는 비상위기발생시 위기대응사업에 저해를 준자에 대하여서는 그가 누구 이든 리유여 하에 관계없이 전시때와 같이 무겁게 보고 엄한 행정적 및 형사적제재를 가하도록 한다.

제 6조 (해당 법규의 적용)

위기대응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제하지 않은 질서는 해당 법규에 따른다.

제2장 위기대응지휘체계와 비상사업체계의 확립

제 7 조 (위 기 대응지 휘 체 계와 비상사업체 계 확립 의 기본요구)

위 기대응지휘 체 계와 비상사업 체계를 정 연하게 세우는것 은 비상위 기 에 신속정 확히 대응하기 위 한 확고한 담보이다.

내각과 성, 중앙기관, 지방인민위원회,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적인 비상위기에 신속정 확히 대응하기 위한 통일적 인 지휘 체 계와 비상사업 체계를 정 연하게 세워 야 한다.

제 8조 (비상위기대책위원회의 조직)

악성전염병류입, 자연재해를 비롯한 국가적인 비상위기가 발생하였을 때 전시때와 같이 식량과 의약품, 생활필수품 등 인민들의 생명안전과 생활안정에서 제기되는 문제,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복구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즉시에 대책할수 있게 중앙에 국가 비상위기대책위원회, 지방에 도 (직할시) , 시 (구역) , 군비상위기대책위원회를 조직한다.

제 9조 (비상위기대책위원회의 구성과 실무보장)

국가비상위 기대 책 위원회는 내 각총리를 위 원장으로 하고 중앙계 획 지도기관, 국방성 , 중앙사 회안전지도기관, 중앙농업지도기관, 중앙검찰기 관 책임일군과 해당 기관 일군들을 부 위원장 으로, 국가검 열 기관, 중앙보건지도기 관, 중앙비상재 해 지 도기관 책 임 일군을 비롯한 해 당 기관 일군들을 위원으로 구성하며 실무보장은 위기류형에 따라 중앙비상재해지도 기관 또는 중앙보 건지도기관에서 맡아한다.

도 (직할시) , 시 (구역) , 군비상위기대책위원회는 도 (직할시) , 시 (구역) , 군책임일군을 위원 장으로 하고 인민위원회, 사회안전기관, 해당 지역에 주둔하고있는 무력기관의 책임 일군을 부책임자로, 검찰기관과 보건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의 일군들을 위원으로 구성하며 실무보 장은 위기류형에 따라 도 (직할시) , 시 (구역) , 군인민위원회 비상재해 지휘부서 또는 보건부 서에서 맡아한다.

제 10조 (국가비상위기대책위원회의 임무와 권한)

국가비상위기대책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국가적인 비상위기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사업을 통일적으로 지휘한다.
2. 위기류형과 상황에 따라 보건위기는 비상방역법의 해당 방역등급에, 자연재해 위기는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법의 해당 재해등급에 준하여 선포 또는 해제한다.
3. 돌발적인 비상사태를 주동적으로, 안정적으로 억제, 관리, 해소하기 위한 긴급 대책안

을 작성, 심의하고 기관, 기업소, 단체에 시달하며 그 집행에 대한 장악과 통제를 한다.

4. 변화되는 비상위기 상황에 맞게 국가의 위기 대응정책을 효율적으로 조정실시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5. 지역별차단봉쇄와 단위별격폐, 재해발생 및 위험지역의 차단 등 위기대응등급에 따르는 비상조치들을 실시하며 위기대응에 필요한 역량과 수단, 설비와 물자를 동원한다.

6. 의약품과 생활필수품을 비롯한 인민들의 생명안전과 생활안정, 재해구조 및 복구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한 즉시적인 대책을 세운다.

7. 위기류형에 따르는 과학적인 대응방법을 합리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8. 사회적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 사소한 부정적현상도 나타나지 않도록 한다.

9. 비상위기상황속에서도 국가의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한 작전과 지휘

를 빈틈없이 한다.

10. 그밖에 위기대응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대책을 세운다.

제 11조 (도, 시, 군비상위기대책위원회의 임무)

도 (직할시) , 시 (구역) , 군비상위기대책위원회는 국가적인 비상사태 또는 지역적인 비상위기가 발생하였을 때 상급비상위기대책위원회의 지휘 밑에 인원구조, 차단봉쇄, 긴급의료대책, 안전지대소개, 2차피 해방지대책, 인민생활안착 등 자기 지역의 위기 상황에 신속정확히 대처하여야 한다.

제 12조 (정부의 행정명령지휘체계확립)

성, 중앙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기관, 기업소, 단체는 위기발생시 내각의 행정명령, 결정, 지시와 국가비상위기대책위원회의 지시가 시달되면 말단집행단위에 이르기까지 즉시에 포치하고 그 집행을 위한 조직사업을 빈틈없이 하며 집행정형을 즉시 내각에 보고하는 강한 규율을 세워야 한다.

제 13조 (비상행동지침서의 작성과 시달)

내각은 전국이 비상위기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비상체제로 이행할수 있는 비상행동지침서를 작성, 시달하여야 한다.

비상행동지침서에는 위기발생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행동질서, 비상예비 물자의 리용질서, 인민생활을 안정시키는데 필요한 식량과 의약품, 생활필수품, 천막, 음료수를 생산보장하는 질서, 재해구조 및 복구에 필요한 설비와 물자들을 총동원하는 사업 등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제 14조 (비상행동계획작성과 비상사업체계의 확립)

성, 중앙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기관, 기업소, 단체는 내각에서 시달한 비상행동 지침서에 준하여 자기 부문, 자기 지역, 자기 단위의 실정에 맞게 비상행동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위기발생시 비상행동계획에 따라 사업하는 체계를 정연하게 세워야 한다.

제 15조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의 의무)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비상위기발생시 내각과 국가비상위기 대책위원회의 통일적인 지휘에 절대복종하여야 한다.

자위적으로 해석, 결론, 행동하지 말아야 하며 류언비어를 류포시켜 민심을 흐리게 하거나 경제생활에 무질서와 혼란을 조성하는것과 같은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 3 장 위기대응능력의 제고

제 16 조 (위 기 대 응능력 제 고의 기 본요구)

위기대응능력을 높이는것은 사회주의건설과 국가의 안전, 인민의 생명재산을 굳건히 수호하기 위한 중요요구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전망적인 위협과 도전에 대응할수 있는 물질기술적준비사업을 다방면적으로 적극화하고 위기관리의 과학화, 정보화,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며 전체 인민의 위기대응의식을 부단히 높여야 한다.

제 17 조 (예 비 물자조성계획 시 달)

중앙계획지도기관과 중앙농업지도기관, 중앙보건지도기관, 중앙상업지도기관은 위기 발생시에 리용할 식량과 의약품, 생활필수품을 포함한 예비물자조성계획을 지표별로 비축기준과 기간, 소요량을 타산하여 구체적으로 세워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시달하여야 한다.

제 18조 (예비물자조성계획실행과 자체축적)

예비물자조성계획을 시달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예비물자를 지표별기준에 따라 정해진

기간안에 조성하여야 한다.

예비물자조성계획을 받지 않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기 단위의 실정에 맞게 비상위기가 발생하는 경우에 리용할 식량, 의약품, 생활필수품, 부식물, 땀감 등 필요한 예비물자들을 자체로 축적하여야 한다.

제 19조 (예비물자의 보관과 리용질서)

기관, 기업소, 단체는 조성된 예비물자를 보관기일에 맞게 정상적으로 교체하여 부패, 변질되지 않도록 하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리용하여야 한다.

예비물자는 위기대응사업과 관련이 없는 다른 사업에 리용할수 없다.

제 20조 (정기적인 비상동원훈련조직)

성, 중앙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는 비상위기가 발생하는 즉시 행동지침서에 따라 비상사업체제로 이행하기 위한 기관, 기업소별, 부문별, 지역별훈련을 정기적으로 진행하여 위기대응능력을 부단히 높여야 한다.

제 21조 (보건위기 대응능력의 제고)

비상방역기관과 보건기관, 해당 기관은 과학적인 검사수단, 의약품, 의료기구, 의료용소모품, 방역물자와 환자수용능력, 치료능력, 격리능력에 따르는 시설을 원만히 갖추고 선진적인 치료전술과 치료방법, 효능높은 치료약물과 고려약 등을 연구, 개발하여 보건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능력을 높여야 한다.

제 22조 (자연재해위기대응능력의 제고)

중앙비상재해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는 큰물, 폭우, 태풍, 해일, 지진을 비롯한 자연재해위기발생시에 동원할 비상구조대와 재해물자, 료전기재, 비상동원기재, 구급차, 의료대, 통신수단, 신호기재 등을 원만히 갖추며 재해관리의 계획화, 정보화, 과학화 수준을 개선하여 자연재해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능력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

제 23조 (위기 발생 시 감독통제기관의 임무)

검찰, 사회안전, 국가검열기관을 비롯한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국가적인 위기발생시 내각의 행정명령, 결정, 지시, 국가비상위기대책위원회의 지시가 신속정확히 집행되도록 법적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제 24조 (위기대응사업의 조건보장)

내 각과 국가계획 기관, 노동행 정기 관, 재 정 은행 기 관, 지 방인민위 원회 , 해 당 기 관은 전 망적 인 위험과 도전에 대응할수 있게 비상방역부문과 보건부문, 재해방지부문의 물질기술적 토대 를 튼튼히 다지는데 필요한 로력과 설비, 자재, 자금 등을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 25조 (국민들의 위기의식, 책임의식제고)

비상방역기 관과 보건기 관, 중앙비상재해지 도기관, 출판보도기 관, 정보산업지도기관, 해당 기관은 각종 위기와 관련한 상식과 위기발생시 대피 및 소개질서, 변화되는 위기 상황 등을 방송, 신문, 컴퓨터망, 손전화를 비롯한 출판보도수단과 정보통신수단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내 보내여 국민들의 위기의식, 책임의식을 부단히 높여야 한다.

제 26 조 (위 기 발생 시 경제부문의 임무)

내각과 성, 중앙기관, 지방인민위원회, 기관, 기업소, 단체는 위기상황에 맞게 경제사업에 대한 조직과 지도, 지휘를 빈틈없이 하며 내적잠재력과 가능성을 최대한 동원하고 생산투쟁, 증 산투쟁을 힘있게 벌려 인민경제계획을 편파없이 순별, 월별, 분기별, 지표별로 무조건 수 행하 여야 한다.

제 27 조 (위 기 발생 시 교육부문의 임무)

중앙교육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위기상황에 맞게 정보통신수단을 통한 원격교육과 안내수 업을 비롯한 여 러가지 합리적인 교육방법을 적극 도입하여 학생들의 학업을 중단없이 진행 하 여야 한다.

제 28 조 (위 기 발생 시 피 해상황장악과 보고)

비상방역기 관과 보건기관, 중앙비 상재해지도기관, 지방인민위원회 , 기관, 기업소, 단체는 위기발생시 자기 지역, 자기 단위의 피해상황을 정확히 장악하여 비상위기 대책위원회와 상 급기관에 제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29조 (방역안정회복 및 복구사업)

비상방역기 관과 보건기관, 중앙비 상재해지도기관, 지방인민위원회 ,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전염병위기를 최종적으로 해소하고 방역안정을 회복하는데 력량을 총집중하며 피해받은 도 로 와 다리, 철도, 통신망, 병원, 살림집, 학교 등 중요대상부터 먼저 복구하는 원칙에서 그 규 모와 순차를 합리적으로 정하고 복구사업을 신속히 진행하여야 한다.

제 4 장 위기대응질서위반행위에 대한 법적책임

제 30조 (위기관리와 관련한 명령, 결정, 지시집행태만죄)

비상위기발생시 위기관리와 관련한 국가의 명령, 결정, 지시, 내각의 행정명령, 결정, 지시, 국가비상위기대책위원회의 지시를 제때에 정확히 집행하지 않았거나 전혀 집행하지 않아 위기관리사업에 커다란 혼란을 조성하였을 경우에는 비상방역법의 비상방역사업과 관련한 명령, 정령, 결정, 지시집행태만죄 또는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법의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 사업과 관련한 명령, 정령, 결정, 지시집행태만죄를 규제한 조문을 적용하여 유기로동교화형 또는 무기로동교화형, 사형에 처한다.

제 31조 (위기관리의무태만죄)

비상위기발생시 위기관리와 관련한 조직사업을 바로 하지 않았거나 위기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무책임하게 하여 위기관리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에는 비상방역법의 비상방역의무태만죄 또는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법의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의무태만죄를 규제한 조문을 적용하여 로동단련형 또는 유기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32 조 (위기관리조건보장태만죄)

비상위기발생시 로력과 설비, 자재, 자금, 물자 등을 제때에 보장하지 않아 위기관리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에는 비상방역법의 비상방역조건보장태만죄 또는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법의 재해구조, 복구조건보장태만죄를 규제한 조문을 적용하여 로동단련형 또는 유기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33조 (비상위기발생시 예비물자비법처분 및 암거래죄)

비상위기발생시 예비물자를 비법처분하였거나 암거래하여 위기관리사업에 지장을 준자는 비상방역법의 비상방역사업방해죄 또는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법의 재해구조, 복구사업방해죄를 규제한 조문을 적용하여 로동단련형 또는 유기로동교화형, 무기로동교화형, 사형에 처한다.

비상방역법의 비상방역사업방해죄 또는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법의 재해구조, 복구사업방해죄를 규제한 조문을 적용하여 로동단련형 또는 유기로동교화형, 무기로동교화형, 사형에 처한다.

제34조 (비상위기발생시 류언비어류포죄)

비상위기발생시 류언비어를 류포시켜 민심을 흐리게 하거나 인민생활과 경제사업에 무질서와 혼란을 조성한자는 비상방역법의 비상방역사업방해죄 또는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

법 의 재해구조, 복구사업방해죄를 규제한 조문을 적용하여 로동단련형 또는 유기로동교화형, 무기 로동교화형, 사형에 처한다.

제 35조 (행정적책임)

이 법 제30조-제34조의 행위가 형사책임을 지울 정도에 이르지 않을 경우에는 비상방역법,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 행정처벌을 준다.